섹션 1557: 마켓플레이스의 건강 보험 및 기타 건강 플랜의 보장사항

섹션 1557은 부담적정보험법(ACA)의 공민권법 조항입니다. 섹션 1557은 인종, 피부색, 국적, 성별,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특정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상의 차별을 금지합니다. 섹션 1557 최종 규칙은 Medicare 환자를 받는 병원이나 Medicaid 지급금을 받는 의사, 건강 보험 마켓 플레이스 및 마켓 플레이스에 참여하는 보험 발행사,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(HHS, 보건복지부)가 자체로 실시하는 일체의 보건 프로그램 등 HHS 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일체의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적용됩니다. 건강 보험 또는 그룹 건강 보험 혜택 설계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규칙 조항의 적용 날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첫 보험 연도(개별 시장의 경우, 보험 증권 연도)의 첫 번째 날입니다.

섹션 1557 은 여러 건강 보험에 가입한 개인을 대상으로 비차별 보호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해당되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보조금, 자산, 연방 Medicaid 부응 기금, Medicare 파트 D 지급금, ACA 의 표제 I 에 따른 재정 지원과 같은 지원을 받는 건강보험 발행사, 병원, 건강 클리닉, 개업의 사무실, 커뮤니티 건강 센터, 요양원, 주 Medicaid 기관 등
- 주 기반, 연방 운영의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
- HHS 가 운영하는 모든 보건 프로그램 및 활동

건강 보험의 보장사항

인종, 피부색, 국적, 성별,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한 다음의 조치는 금지됩니다. 해당 주체는 특히 차별적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.

- 건강 관련 보험 플랜이나 기타 보장의 발행 또는 갱신을 부인, 취소, 제한 또는 거부
- 청구에 대한 부인이나 제한 또는 추가 비용 부과 또는 기타 제한이나 제약을 부과
- 건강 관련 보험이나 기타 보장에 있어 차별적인 마케팅 관행을 적용하거나 차별적인 특혜성 설계를 도입 또는 시행

섹션 1557 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://www.hhs.gov/civil-rights/for-individuals/section-1557 을 참조하십시오.